

평창군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의안번호	제 144 호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9년 9월 일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정이유

- 0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·관리함으로써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범위 규정 (안 제2조)
- 나. 회계간 전용할 수 없음을 규정(안 제3조)
- 다. 특별회계 사무는 일반회계 예에 의함을 규정(안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덧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관계법령 위임사무
- 라.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: 불임
- 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.

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세입 및 세출) ①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국가 또는 시·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
2.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4. 차입금
5.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②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2.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3.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4.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제3조 (회계간 전용)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제4조 (사무취급 예) 이 특별회계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취 서

□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

제16조 (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등) ①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리·운영한다.

제17조 (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가 또는 시·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
2.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4. 차입금
5.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2.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3.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4.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□ 동법 시행령

제16조 (특별회계의 세출)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의 지원사업
2.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

제23조 (기금의 용도) 법 제22조제7호에서 "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말한다.

1.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
2. 수변녹지 조성사업

3.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
4. 환경기초조사사업
5.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

여 위원회가 협의·조정한 사업

6.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
7. 상수원보호구역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
8. 오염하천정화사업
9.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
10.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
11. 녹조방지사업